



서울시전세버스운송사업조합

수신자 전 회원사
(참 조)
제 목

교통안전법 및 도로교통법 일부 개정법률 공포 알림

1. 행정안전부 전자관보 제19768호(2020.06.09.)와 관련입니다.

2. 운행기록장치 의무 장착 대상에 어린이통학버스 운영자를 추가하는 내용의 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 공포 및 운행 시 제한된 최고속도보다 초과 운행할 경우 처벌기준을 강화토록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이 공포되었음을 알려드리오니, 각 사에서는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= 아 래 =

가. 교통안전법 일부개정 법률안

- 운행기록장치 의무장착 대상에 어린이 통학버스 운영자 추가
(시행일 :2021.01.01.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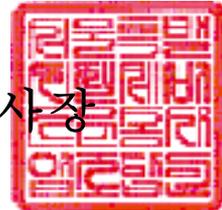
나. 도로교통법 일부개정 법률안 (제한된 최고속도보다 초과 운행할 경우)

초과속도	처분내용	시행일
80km/h 초과	30만원 / 구류	2020.12.10
100km/h 초과	100만원 / 구류	2020.12.10
100km/h 초과 3회 이상	500만원 / 면허취소 / 1년 징역	최초 발생일

※ 불임 : 전자관보 사본 1부.

※ 불임자료는 조합홈페이지(www.tourbus.or.kr)에서 내려 받으실 수 있습니다. [끝]

서울시전세버스운송사업조합 이사장



담 당 박영수 부 장 라영석 실 장 박호동 전무이사 박태환

협조자

시행 서전버조 20- 159호 (2020.06.11) 접수 ()
우 05510 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로 319 (교통회관 11층) / <http://www.tourbus.or.kr>
전화 02-422-0019 전송 02-418-0071 / / 공개

"안전띠는 생명띠 정지선은 생명선"